|  |  |  |
| --- | --- | --- |
|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92호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규정>이 2017년 10월 1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7년 11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식품 안전•위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비안(備案)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비안(備案)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비안(備案) 관리 업무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의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로 약칭)이 전국의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조직 및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로 약칭)가 해당 관할구역 내의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업무와 감독검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수출기업 생산기업은 위해요소 분석 및 예방통제 조치를 핵심으로 한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은 식품 방호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수출식품 생산•가공•저장 과정에서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수출식품 생산기업 안전•위생 요구와 수출국(지역)의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여야 한다.  제2장 비안(備案) 절차와 요구사항  제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비안(備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안(備案) 심사에서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의 제품 수출을 불허한다.  제7조 비안(備案) 신청 시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1) 영업집조,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 책임자의 신분증명;  (2) 관련 법률•법규 및 요구사항에 부합됨을 확약하는 기업의 성명서와 자기검사보고서;  (3) 기업의 생산조건, 제품 생산•가공 공법, 식품 원료•부자재 및 식품첨가제 사용 상황과 위생•품질 관리인원 등 기본 상황;  (4)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통제 조치를 핵심으로 한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 구축•실시 상황;  (5) 법에 의거하여 관련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8조 검사검역부서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비안(備案)을 신청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제출한 비안(備案)서류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수출식품 생산기업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검역부서는 비안(備案)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심사를 실시 완료하고 전문가평가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가 평가심사는 주로 서류심사 방식을 취하며 수입국(지역)의 특수 등록 요구사항이 있거나 리스크 정도가 비교적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 항에 규정한 전문가 평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검사검역부서의 비안(備案) 심사•결정 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인증기구가 발행한 위해요소 분석 및 핵심 통제 포인트(HACCP) 인증결과 또는 이와 효과가 동등한 기타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 인증결과는 평가심사 시 근거로 채택하여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위해요소 분석 및 예방통제 조치를 핵심으로 한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성명하는 경우 평가심사 시 기업의 신용기록과 결부시켜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근거로 채택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검역부서는 전문가평가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비안(備案)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안(備案)을 허가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증명>(이하 '<비안(備案)증명>'으로 약칭)을 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비안(備案)을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기업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인감위와 직속 검사검역부서는 전문가 평가심사 업무 종사자 명단을 발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평가심사 인원의 전문 수준과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13조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검역부서는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요휴기간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기업명칭, 법정대표인, 영업집조 등 비안(備案)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주소지 이전, 생산라인 신축•개축,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비안(備案) 수속을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 운영기록 및 수출식품 생산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록•증빙은 최소한 식품 유통기한 만료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명확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할 경우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매년 1월 말까지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직전 연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 안전•위생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원인분석자료 및 시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검역부서는 시정 상황에 대한 현장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7조 국가인감위는 검사검역부서가 실시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검사검역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의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범칙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사검역부서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번호 부여규칙에 따라 비안(備案)이 이뤄진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검역부서는 리스크 분석을 토대로 기업의 신용기록과 결부시켜 수출식품 생산기업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별화된 감독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감독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동적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는 보고서 심사, 현장검사 및 특별검사 등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검사검역부서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결부시켜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검사검역부서는 해당 관할구역 내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명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전국의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명록을 통일적으로 공개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검사검역부서는 감독관리 과정에서 업무직책에 근거하여 지방의 농업, 식품•약품, 질량감독 등 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안전 리스크 정보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사검역부서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업의 연도보고서, 감독검사 상황, 위법행위•범칙행위 등 정보를 적시에 심사•취합하고 기업의 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증기구는 그가 발행한 위해요소 분석 및 핵심 통제 포인트(HACCP) 인증결과 또는 이와 효과가 동등한 기타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 인증결과에 대하여 상응하는 벌률책임을 부담한다.  인증기구가 전 항의 인증을 획득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인증기구의 관련 인증결과를 근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인증기구가 위법행위를 행함으로써 조사처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의 관련 인증결과를 근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위법행위•범칙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기업의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약담(約談) 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기한 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시정 기간에는 기업의 관련 식품에 대한 수출검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식품이 기업 자체의 안전•위생 문제로 인하여1년 내에 수입국(지역)의 주관 당국으로부터 3회 이상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검사검역 과정에서 수출식품의 안전•위생 문제가 발견된 경우.  (3) 비안(備案) 조건에 부합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수출식품에 안전•위생 문제 발생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제2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비안(備案)증명>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대한 수출식품 안전•위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출식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비식용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하거나 식품첨가제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류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식품을 생산•가공하는 등 행위를 행한 경우;  (3) <비안(備案)증명>을 임대, 대여, 양도, 매매, 변조하는 경우;  (4) 검사검역부서의 감독관리를 거부하거나 또는 감독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공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이 규정 제25조에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를 총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6) 법에 따를 때 <비안(備案)증명>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기타 경우.  제27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비안(備案)증명>을 말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종료되었거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3) <비안(備案)증명>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경우;  (4) 법에 따를 때 <비안(備案)증명>을 말소하는 것이 마땅한 기타 경우.  제4장 법률책임  제28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1) 이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식품 안전•위생 문제가 발생한 후 이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다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국가인감위 및 검사검역부서의 업무인력이 비안(備案) 및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1조 해외(경외)에서 위생등록 수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이 중국 및 수입국(지역)의 관련 요구에 의거하여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신청을 제출한 후 국가인감위가 통일적으로 대외 추천한다.  검사검역부서는 감독관리 과정에서 해외(경외)에서 위생등록 수속을 이행한 기업이 수입국(지역)의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거나 <비안(備案)증명>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말소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 그 대외 추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 이 규정에서 검사검역부서의 행정허가 실시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 규정에서 수출식품 생산기업라 함은 수출용 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 생산•가공•저장하는 기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홍콩•마카오에 공급되는 식품, 국경지대의 소액무역 또는 물물교환무역을 통해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국가질검총국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이 규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6조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이 2011년 7월 26일 공포한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管理规定**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92号  《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管理规定》已经2017年10月10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8年1月1日起施行。  局 长  2017年11月14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出口食品生产企业食品安全卫生管理，规范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管理工作，依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实行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管理制度。  第三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管理工作适用本规定。  第四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工作。  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国家认监委）负责统一组织实施全国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管理工作。  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部门（以下简称检验检疫部门）具体实施所辖区域内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和监督检查工作。  第五条 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建立和实施以危害分析和预防控制措施为核心的食品安全卫生控制体系，该体系还应当包括食品防护计划。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保证食品安全卫生控制体系有效运行，确保出口食品生产、加工、储存过程持续符合我国相关法律法规和出口食品生产企业安全卫生要求，以及进口国（地区）相关法律法规要求。  第二章 备案程序与要求  第六条 出口食品生产企业未依法履行备案法定义务或者经备案审查不符合要求的，其产品不予出口。  第七条 出口食品生产企业申请备案时，应当向所在地检验检疫部门提交以下文件和证明材料，并对其真实性负责：  （一）营业执照、法定代表人或者授权负责人的身份证明；  （二）企业承诺符合相关法律法规和要求的自我声明和自查报告；  （三）企业生产条件、产品生产加工工艺、食品原辅料和食品添加剂使用以及卫生质量管理人员等基本情况；  （四）建立和实施以危害分析和预防控制措施为核心的食品安全卫生控制体系的基本情况；  （五）依法应当取得其他相关行政许可的，提供相应许可证照。  第八条 检验检疫部门应当自出口食品生产企业申请备案之日起5日内，对出口食品生产企业提交的备案材料进行初步审查，材料齐全并符合法定形式的，予以受理；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一次性告知出口食品生产企业需要补正的全部内容。  第九条 检验检疫部门应当自受理备案申请之日起20日内，组织专家完成评审工作，并出具专家评审报告。专家评审主要采取文件评审方式，对进口国（地区）有特殊注册要求或者风险程度较高的企业，可以实施现场评审。  前款规定的专家评审时间不计算在检验检疫部门备案审查和决定期限内。  第十条 对依法取得资质的认证机构出具的危害分析和关键控制点（HACCP）认证结果或者其它等效的食品安全卫生控制体系认证结果，评审时应当予以采信。  出口食品生产企业声明已经建立以危害分析和预防控制措施为核心的食品安全卫生控制体系并有效运行的，评审时可以结合企业信用记录适当采信。  第十一条 检验检疫部门应当自收到专家评审报告之日起20日内进行审查，并作出是否准予备案的决定。准予备案的，自作出决定之日起10日内，向企业颁发《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证明》（以下简称《备案证明》）；不予备案的，应当书面告知企业并说明理由。  第十二条 国家认监委和直属检验检疫部门应当公布从事专家评审工作的人员名单，并通过持续培训，不断提高评审人员的专业水平和能力。  第十三条 《备案证明》有效期为5年。  出口食品生产企业需要延续《备案证明》有效期的，应当在其有效期届满30日前，向所在地检验检疫部门提出延续申请。检验检疫部门应当在《备案证明》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  第十四条 出口食品生产企业的企业名称、法定代表人、营业执照等备案事项发生变更的，应当自发生变更之日起15日内，向所在地检验检疫部门申请办理变更手续。  出口食品生产企业生产地址搬迁、新建或者改建生产车间以及食品安全卫生控制体系发生重大变更等情况的，应当在变更前向所在地检验检疫部门报告，并重新办理备案。  第十五条 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建立食品安全卫生控制体系运行及出口食品生产记录档案，记录和凭证的保存期限不得少于食品保质期满后6个月；没有明确保质期的，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十六条 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于每年1月底前向其所在地检验检疫部门提交上一年度报告。  出口食品生产企业发生食品安全卫生问题的，应当及时向所在地检验检疫部门报告，并提交相关材料、原因分析和整改计划。检验检疫部门应当对整改情况进行现场监督检查。  第三章 监督管理  第十七条 国家认监委对检验检疫部门实施的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工作进行指导和监督。  检验检疫部门应当依法对所辖区域内的出口食品生产企业进行监督检查。发现违法违规行为的，应当及时查处，并将处理结果上报国家认监委。  第十八条 检验检疫部门应当按照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编号规则对予以备案的出口食品生产企业进行编号管理。  第十九条 检验检疫部门应当在风险分析的基础上，结合企业信用记录，对出口食品生产企业进行分类管理，确定不同的监督检查方式，并根据监督检查结果进行动态调整。  监督检查可以采取报告审查、现场检查和专项检查等方式进行。  第二十条 检验检疫部门可以将对出口食品生产企业的监督检查和对相关认证活动的监督检查结合进行。  第二十一条 检验检疫部门应当公布本辖区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名录。国家认监委统一公布全国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名录，并报国家质检总局。  检验检疫部门在监管中获悉食品安全风险信息，根据工作职责需要向地方农业、食药、质监等监管部门通报的，应当及时通报。  第二十二条 检验检疫部门应当建立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管理档案，及时审查汇总企业年度报告、监督检查情况、违法违规行为等信息，并纳入企业信用记录。  第二十三条 认证机构对其出具的危害分析和关键控制点（HACCP）认证结果或者其它等效的食品安全卫生控制体系认证结果承担相应法律责任。  获得前款规定认证的出口食品生产企业存在严重问题，认证机构未及时进行处理的，自发现之日起1年内不予以采信认证机构相关认证结果。  认证机构因违法行为被查处的，自发现之日起2年内不予以采信其相关认证结果。  第二十四条 出口食品生产企业存在违法违规行为的，检验检疫部门可以约谈企业相关负责人。  第二十五条 出口食品生产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检验检疫部门应当责令其限期整改，整改期间不受理企业相关食品的出口报检：  （一）出口食品因企业自身安全卫生方面的问题在1年内被进口国（地区）主管当局通报3次以上的；  （二）出口食品经检验检疫时发现存在安全卫生问题的；  （三）不能持续符合备案条件，出口食品存在安全卫生隐患的。  第二十六条 出口食品生产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检验检疫部门应当撤销《备案证明》，予以公布，并向国家认监委报告：  （一）出口食品发生重大安全卫生事故的；  （二）出口食品生产、加工过程中有非法添加非食用物质、违规使用食品添加剂或者采用不适合人类食用的方法生产、加工食品等行为的；  （三）出租、出借、转让、倒卖、涂改《备案证明》的；  （四）不接受检验检疫部门监督管理，或者在接受监督管理时隐瞒有关情况、提供虚假材料，且拒不改正的；  （五）存在本规定第二十五条所述情形，经整改后仍不能符合要求的；  （六）依法应当撤销《备案证明》的其他情形。  第二十七条 出口食品生产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检验检疫部门应当注销《备案证明》，予以公布，并向国家认监委报告：  （一）《备案证明》有效期届满，未申请延续的；  （二）出口食品生产企业依法终止或者申请注销的；  （三）《备案证明》依法被撤销的；  （四）依法应当注销《备案证明》的其他情形。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八条 出口食品生产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  （一）未按照本规定保存相关档案或者提交年度报告的；  （二）发生食品安全卫生问题，未按照本规定及时向所在地检验检疫部门报告的；  （三）未按照本规定办理变更或者重新备案的。  第二十九条 出口食品生产企业违反《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等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依照相关规定追究其法律责任。  第三十条 国家认监委和检验检疫部门的工作人员在实施备案和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章 附 则  第三十一条 出口食品生产企业需要办理国外（境外）卫生注册的，应当按照本规定取得《备案证明》，依据我国和进口国（地区）有关要求，向其所在地检验检疫部门提出申请，并由国家认监委统一对外推荐。  检验检疫部门在监管中发现获得国外（境外）卫生注册的企业不能持续符合进口国（地区）注册要求，或者其《备案证明》已被依法撤销、注销的，应当报国家认监委取消其对外推荐注册资格。  第三十二条 本规定中检验检疫部门实施行政许可的期限以工作日计算，不含法定节假日。  第三十三条 本规定所称的出口食品生产企业不包括出口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的生产、加工、储存企业。  第三十四条 供港澳食品、边境小额和互市贸易出口食品，国家质检总局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三十五条 本规定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三十六条 本规定自2018年1月1日起施行。国家质检总局于2011年7月26日公布的《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管理规定》同时废止。 |